

통권 제80호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서희진 특수전문직4급

# 목 차

I. 서론 .....	3
II.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4
III. 요약 및 시사점 .....	15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OECD 2019년 보고서 『Taxing Wages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I

## 서론

- ▶ OECD는 2019년 4월 11일 OECD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출간
  -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OECD 회원국의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조세부담 수준 및 추이를 가구 형태 및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 다만, 가구형태별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제도만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산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비교 및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라면 간접세,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소득, 기타 세액공제, 보조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
  - ▶ 조세격차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이하 'SSC')의 합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조세격차(\%)} = \frac{\text{개인소득세} + \text{사회보험료(근로자분+고용주분)} - \text{현금 보조금}}{\text{노동사용비용(급여+지불급여세+사회보험료(고용주분))}} \times 100$$

    - OECD에서는 조세격차를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사용비용과 근로자의 실소득(net take-home pay)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II

##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1.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격차는 36.1%로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표 1〉 참조)
  - ▶ OECD 회원국 중 20개 국가의 조세격차가 OECD 평균치를 상회하며, OECD 평균치 보다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6개국임
  - ▶ OECD 평균 조세격차는 전년 대비 평균 0.16%p 감소하였으며,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전년 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22개국이며, 감소한 국가는 14개국임
  - ▶ 우리나라의 2018년 조세격차는 23%로 전년 대비 0.49%p 증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임(OECD 회원국 중 31위)

표 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단위: %, %p)

국가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고용주SSC <sup>1)</sup>
독일	49.5	-0.09	0.06	-0.12	-0.04
프랑스	47.6	0.04	1.36	-1.87	0.55
이탈리아	47.9	0.20	0.20	0.00	0.00
일본	32.6	0.12	0.03	0.02	0.07
미국	29.6	-2.19	-2.14	0.00	-0.06
캐나다	30.7	0.11	0.21	-0.03	-0.07
영국	30.9	-0.11	-0.05	-0.02	-0.03
한국	23.0	0.49	0.34	0.08	0.07
OECD 평균	36.1	-0.16	-0.08	-0.02	-0.06

주: 1) 지불급여세(payload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3

- ▶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및 [그림 1] 참조)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총노동사용비용은 53,816달러이며, 조세격차 36.1% 중 소득세가 13.5% 사회보험료가 22.6%를 차지함
  - ▶ 사회보험료 22.6%은 근로자 부담 8.2%와 고용주 부담 14.4%으로, 근로자 부담보다 고용주 부담이 약 1.7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노동사용비용은 62,391달러(14위)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조세격차 23.0% 중 소득세가 5.8%, 사회보험료가 17.2%를 차지함
    - 우리나라 조세격차 중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3.5% 보다 7.7%p 낮았으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 우리나라 조세격차 중 사회보험료 비중은 근로자 부담 7.7%와 고용주 부담 9.5%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두 부담률 간 차이는 OECD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약 1.23배)

**표 2**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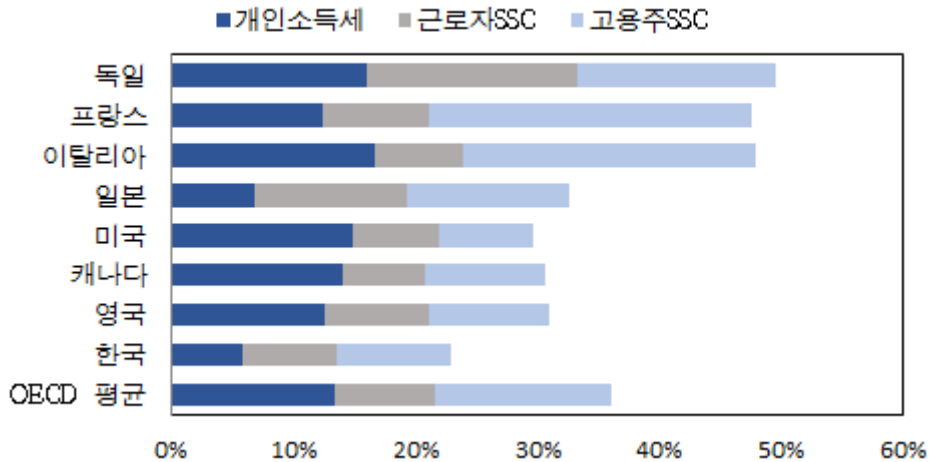
국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독일	49.5	16.0	17.3	16.2	80,284
프랑스	47.6	12.3	8.8	26.5	70,105
이탈리아	47.9	16.7	7.2	24.0	59,594
일본	32.6	6.8	12.5	13.3	59,776
미국	29.6	14.9	7.1	7.6	59,485
캐나다	30.7	14.1	6.6	10.0	47,476
영국	30.9	12.6	8.5	9.8	63,287
한국	23.0	5.8	7.7	9.5	62,391
OECD 평균	36.1	13.5	8.2	14.4	53,816

주: 1) 지불급여세(payload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2) 구매력평가기준 미국달러 환산(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4

**그림 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5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의 평균급여수준(average earning level)은 총급여액 46,107달러이며, 개인 조세부담률은 25.5% 수준임(〈표 3〉 참조)
  - ▶ 25.5%의 개인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15.7%와 사회보험료 9.8%(근로자 분)로 구성되어 있음
  - ▶ 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 수준은 56,488달러<sup>1)</sup>로 OECD 평균을 상회하나(36개국 중 13위),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14.9%)을 보임
    - 특히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6.4%로 OECD 평균인 15.7%보다 9.3%p 낮았으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표 3** 2018년 주요국의 개인 조세부담률(소득세+사회보험료(근로자 분)) 비교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총급여 수입 대비 %)

(단위: %, 달러)

국가	개인 조세부담률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총급여 <sup>1)</sup>
독일	39.7	19.1	20.6	67,254
프랑스	28.7	16.8	11.9	51,504
이탈리아	31.4	21.9	9.5	45,291

1) 구매력평가기준 미국달러로 환산한 수치이며, 한화로는 4,800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임

국가	개인 조세부담률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총급여 <sup>1)</sup>
일본	22.3	7.9	14.5	51,849
미국	23.8	16.1	7.7	54,951
캐나다	23.0	15.7	7.4	42,730
영국	23.4	14.0	9.4	57,095
한국	14.9	6.4	8.5	56,488
OECD 평균	25.5	15.7	9.8	46,107

주: 1) 구매력평가기준 미국달러 환산(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7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6.6%로 동일 소득 수준의 독신가구보다 9.5%p 낮음 (<표 4> 참조)
  - ▶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법상 혜택과 현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가짐
  - ▶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1%로 동일 소득 수준의 독신가구 조세격차 23%보다 2%p 낮음
    -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표 4 2018년 주요국의 2자녀·외벌이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 비교 (평균급여수준 기준)

(단위: %, %p)

국가	가구별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2자녀·외벌이 (A)	독신 (B)	차이 (A)-(B)	2자녀·외벌이	독신	차이율
독일	34.4	49.5	-15.1	0.05	-0.09	-0.14
프랑스	39.4	47.6	-8.3	-0.07	0.04	0.11
이탈리아	39.1	47.9	-8.8	0.53	0.20	-0.33
일본	27.4	32.6	-5.2	0.17	0.12	-0.05
미국	18.5	29.6	-11.1	-2.41	-2.19	0.22
캐나다	11.7	30.7	-19.1	0.97	0.11	-0.86
영국	26.2	30.9	-4.7	-0.04	-0.11	-0.07
한국	21.0	23.0	-2.0	0.59	0.49	-0.10
OECD 평균	26.6	36.1	-9.5	0.00	-0.16	-0.17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30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2자녀·맞벌이·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sup>2)</sup> 조세격차는 30.8%로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에 비해 5.3%p 낮음
- ▶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맞벌이·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7%로 독신·평균급여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23%)에 비해 2.3%p가 낮으며, 이 역시 OECD 회원국 차이인 5.3%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2. 2018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형태<sup>3)</sup>별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참조)
  - ▶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가 조세부담이 크며,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 가구에서 크게 나타남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32.1%로 한 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의 조세격차 16%보다 약 2배 이상의 높은 조세 부담을 보임
  - ▶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16%로 가장 낮은 조세부담을 보이며,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67% 수준인 가구는 40.4%로 가장 높은 조세부담을 보임
- ▶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부담률 차이는 OEC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낮은 수준임 (〈표 5〉 참조)
  - ▶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현황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가구에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보다 낮으나, 취약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함

2)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을 얻고 다른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를 말함

3) 결혼유무, 자녀 수, 경제상황에 따라 8가지 가구 형태(household types)로 구분하여 비교함

1.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2. 독신·무자녀·평균 급여 수준 가구
3.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167% 수준 가구
4. 한 부모·2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5. 부부·2자녀·평균급여의 100% 수준 가구(외벌이)
6.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의 33% 수준) 가구
7.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의 67% 수준) 가구
8. 부부·무자녀·평균급여의 133%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 급여의 33% 수준) 가구

표 5 2018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국가	독신 무자녀 67%	독신 무자녀 100%	독신 무자녀 167%	한부모 2자녀 67%	부부 2자녀 100% (외벌이)	부부 2자녀 133% <sup>1)</sup> (맞벌이)	부부 2자녀 167% <sup>2)</sup> (맞벌이)	부부 무자녀 133% <sup>3)</sup> (맞벌이)
독일	45.4	49.5	51.3	31.5	34.4	39.0	42.6	45.3
프랑스	43.1	47.6	54.1	25.2	39.4	36.9	42.4	42.2
이탈리아	40.9	47.9	54.0	25.9	39.1	38.6	41.7	42.9
일본	31.2	32.6	35.1	25.2	27.4	28.2	29.6	31.3
미국	27.6	29.6	34.1	9.6	18.5	22.0	23.9	27.5
캐나다	25.8	30.7	32.1	-15.2	11.7	19.9	24.1	27.6
영국	26.1	30.9	37.3	10.4	26.2	22.9	26.5	26.0
한국	19.8	23.0	25.4	17.6	21.0	20.4	20.7	21.6
OECD평균	32.1	36.1	40.4	16.0	26.6	28.1	30.8	32.9

주: 1)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얻는 가구

2)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

3)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얻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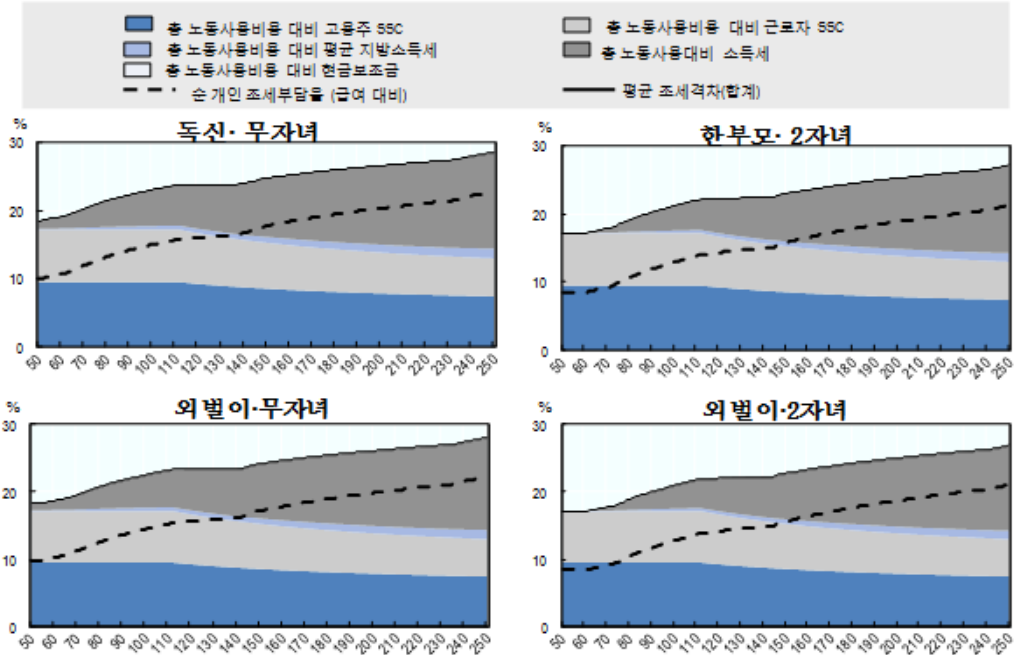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69

### 3.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 ▶ 우리나라 모든 형태의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조세격차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세격차 구성요소도 가구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2] 참조)
  - ▶ 다만, 저소득 구간에서는 사회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가 조세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고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또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격차는 대부분 10% 후반에서 30% 미만에 분포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 볼 때 가구 형태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2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조세격차 구성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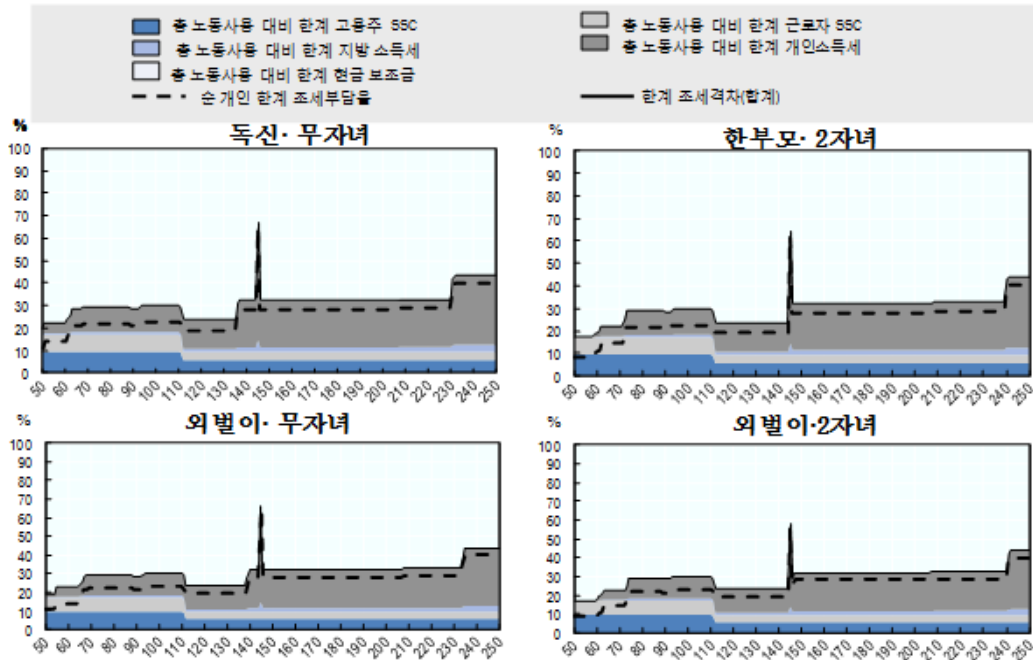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111

- ▶ 모든 형태의 가구에서 한계 조세격차<sup>4)</sup>는 소득구간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 조세격차 그래프의 양상은 대체로 비슷([그림 3] 참조)
  - ▶ 특정 소득구간별로 한계 조세격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구간 별로 단일의 사회보험료율과 소득세율을 과세하기 때문임
  -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서 일정 소득 구간에서 한계 사회보험료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급여 110% 수준에서 사회보험료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 여러 OECD 회원국에서 저소득구간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0%이상의 높은 한계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 여러 OECD 회원국에서는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많기에, 저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 혜택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4) 한계 조세격차(marginal tax wedge)란 소득자의 총 급여가 1 통화 단위 증가 할 때마다 증가하는 조세부담(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근로자분+고용주분) - 현금 보조금)을 말함

그림 3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 조세격차 구성현황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111

#### 4.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추이(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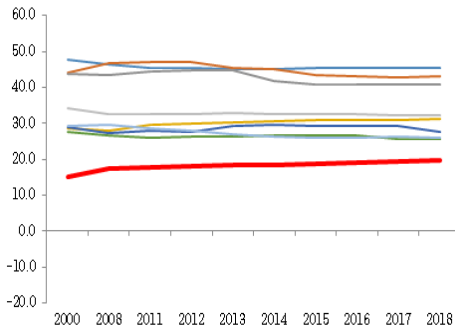
- ▶ 2018년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소득수준과 가구형태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그림 4] 참조)
  - ▶ 독신·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에 비해 1.3%p 감소하였으며,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4.1%p 감소함
-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 형태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그림 4] 참조)
  - ▶ 다만, 취약층으로 볼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16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해당 가구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조세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4 2000년 ~ 2018년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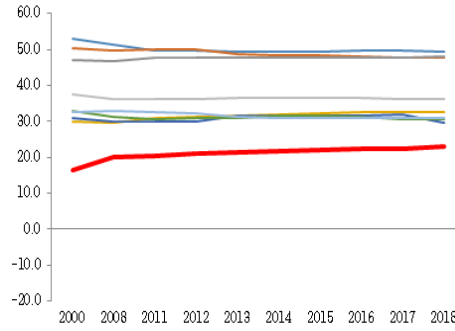
(단위: %)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미국
- 캐나다
- 영국
- 한국
-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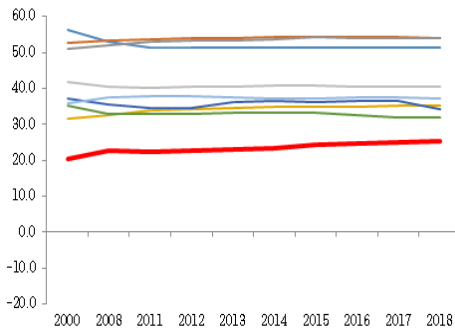
독신·평균급여 6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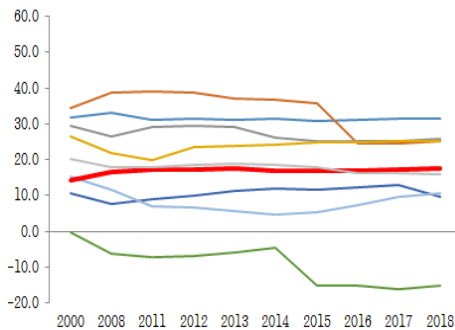
독신·평균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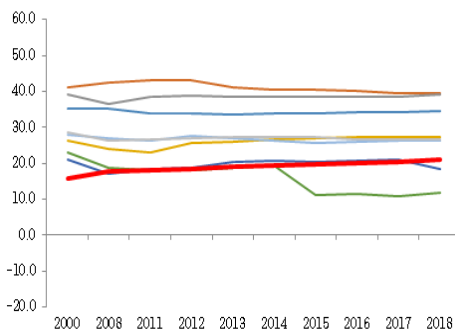
독신·평균급여 16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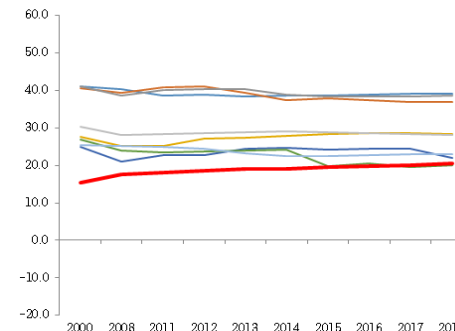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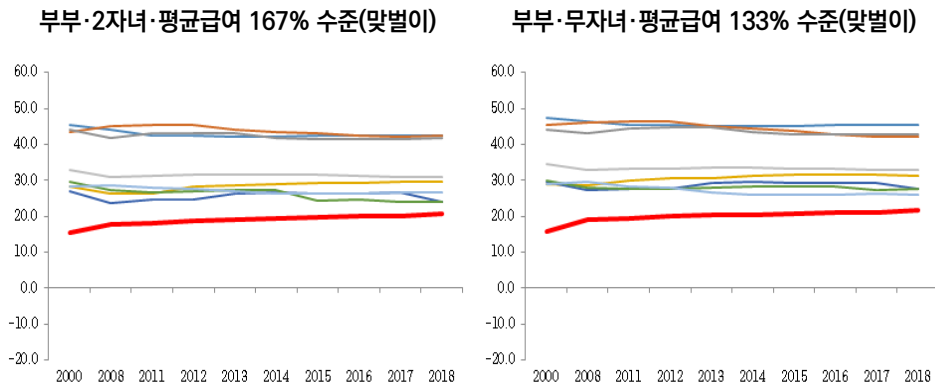


부부·2자녀·평균급여 수준(외벌이)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맞벌이)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p. 154~1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OECD 회원국 중 일부의 가구형태에서 2018년도 조세격차가 2000년에 비하여 5%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총 15개국임
  -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임
    - 이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는 폴란드로, 그 중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2000년도 조세격차는 29.8%였으나, 2018년도에는 -12%로 총 41%p 감소하였음
- ▶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일부의 가구형태에서 2018년도 조세격차가 2000년도에 비하여 5%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개국임
  - ▶ 우리나라, 체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임
    - 이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그 중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 5.9%에서 2018년도에는 19.5%로 13.6%p 증가하였음
-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2000년도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조세격차가 증가한 가구는 독신·평균급여 수준 가구로 6.6%p 증가함(표 6) 참조
  - ▶ 독신·평균급여 수준, 부부·2자녀·평균급여 수준(외벌이),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 수준, 부부·무자녀·평균급여 133% 수준의 가구에서 5%p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표 6** 2000년 ~ 2018년도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단위: %, %p)

가구형태	2000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변동 <sup>4)</sup>
독신 67%	15.0	17.4	17.8	18.0	18.4	18.5	18.7	19.2	19.3	19.8	△4.8
독신 100%	16.4	20.0	20.5	21.0	21.5	21.7	22.0	22.3	22.5	23.0	△6.6
독신 167%	20.5	22.6	22.2	22.6	23.0	23.5	24.2	24.6	25.0	25.4	△4.9
한부모 2자녀 67%	14.4	16.6	17.1	17.3	17.5	16.9	17.0	17.0	17.3	17.6	△3.2
부부 2자녀 100%	15.7	17.8	18.0	18.5	19.1	19.4	19.8	20.1	20.4	21.0	△5.3
부부 2자녀 133% <sup>1)</sup>	15.3	17.6	18.0	18.6	19.0	19.2	19.5	19.7	19.9	20.4	△5.1
부부 2자녀 167% <sup>2)</sup>	15.5	17.8	18.2	18.6	19.1	19.3	19.6	20.0	20.1	20.7	△5.2
부부 무자녀 133% <sup>3)</sup>	15.8	19.0	19.6	20.0	20.4	20.5	20.8	21.0	21.1	21.6	△5.8

주: 1)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버는 가구

2)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버는 가구

3)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버는 가구

4) 2000년도 대비 2018년도의 조세격차 변동을 의미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p.154-161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 III

## 요약 및 시사점

- ▶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56,488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상위권(36개국 중 13위)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23%(독신기준)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특히, 소득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임
- ▶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부양가족(자녀)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보고서에서 다룬 총 8개의 가구 형태 중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만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동일 소득 수준의 독신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참고문헌 |

- OECD, *Taxing wages 2019*, 2019.

■ 서 희 진 특수전문직4급 /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044-414-2276)



##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044-414-2501
- 팩 스: 044-414-2509
-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

